

순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2. 11 . 16.

개정 2019. 7.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명칭은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CNU_IACUC”로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교에서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직원, 대학(원)생 및 그 밖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실험과 관련한 모든 실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학술연구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로서 교육·학술연구에 이용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5.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학교 교직원, 대학(원)생 및 그 밖의 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위원”이란 동물실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철학·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5.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당해 안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을 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문위원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산학협력과 직원 중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 7. 17.)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동물실험의 지도·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동물실험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해당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정한다)의 윤리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실험·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의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태점검
3. 동물실험계획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반한 경우 동물실험의 개선 및 중지 요구
4. 그 밖의 동물실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법

제10조(동물실험의 승인) 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이 승인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을 개시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한다.

④ 승인서 등 동물실험에 관한 증빙서류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 검토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물실험실의 구비
8.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심의 내용 및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2. 11 .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7.>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순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학연구지원과”를 “산학협력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II. 동물실험 개요

1. 연구목적 및 동물실험 개요	
<p>가. 연구(실험) 목적 :</p> <p>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략하게 연구의 목적, 해당 연구가 인간과 동물복지, 학문의 발달 및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등을 설명합니다.</p> <p>나. 예상 성과 :</p>	
<p>다. 동물실험 개요 :</p> <p>각 실험군의 자세한 수량과 실험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p> <p>※ 연구기간이 다년도인 경우, 연차별 동물실험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합니다.</p>	
2.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p>※ 반드시 동물실험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이유와 불필요한 중복실험이 아님을 과학적근거에 맞추어 설명 (아래 Pubmed 검색자료 첨부 등)</p>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input type="checkbox"/>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검색사이트	<input type="checkbox"/> PubMed <input type="checkbox"/> Current Contents Connect <input type="checkbox"/> 한국학술정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
Key words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비 고	
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p>동물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p>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가능하면 동물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p>해당 동물수가 통계학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임을 설명 (동물수량의 적절성)</p>	

III. 동물실험

1. 동물실험수행 계획
가. 실험장소 및 실번호(위치) : 나. 개시일 : 연월일 기재 다. 종료일 : 연월일 기재 라. 실험기간 :

2. 생물학적 안전도 ※ 미생물 시험에만 해당됨, 해당란에 Check(v)				
GRADE	BS I	BS II	BS III	BS V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동물실험방법(프로토콜) 개요		
보정	방법	
	횟수	
	1회당 소요시간	
식별법	귀꼬리표, 문신, 목줄, 케이지표, 이식, 기타()	
Stress	사료 및 음수의 제한, 위해한 자극, 환경적인 스트레스	
투여방법	감염인자 및 adjuvant	
	Route, 시료 및 용량	
	일정	
Sampling	종류	
	용량 및 횟수	
	방법 및 부위	

외과적 처치	없음	생존 수술	비생존수술
외과적 처치 (각 수술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수의학적 관리	동물에서 질병 발생시 바람직한 조치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예, 실험 동물의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치명적인 감염이나 질병 발생시 지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안락사를 행한다.)		
실험의 종료시점 (※ 인도적 종료시점 및 동물실험 종료시점에 대해 기술함)	1. 인도적 종료시점: 동물에게 심각한 임상증상이나 잠재적으로 치사할 가능성을 내재한 종양세포, 생물학적 물질 및 감염성인자의 투여 또는 방사선조사, 독성화학물의 투여시 동물실험종료점에 대한 기준 (예, 종양크기, 체중증감율, 사료섭취불가, 행동학적인 이상, 임상 증상, 독성증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동물실험종료점의 기준에 의거하여 안락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2. 수행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상의 종료시점		

4. 위험물질 처치 유무 ※ 해당있는 경우 기재						
종류	×	○	승인기관 및 승인일	물질명	투여방법 및 dose	Tracking #
방사선						
생물학적						
위험화학물						
Recombinant DNA						
기타						

※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 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병원균이나 재조합 DNA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6.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체크시 별표 참조)
<input type="checkbox"/> Grade A :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Grade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Grade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Grade D;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input type="checkbox"/> Grade E;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p>※ Grade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8번 항목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p>

7.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마취제·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시간, 경로를 기입) - 약제종류(약물명) : - 투여량 등 기재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8.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 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input type="checkbox"/>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input type="checkbox"/>	연구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상세 사유 기재) 예)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9.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안락사시 최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내용을 기재(아래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

10. 안락사 및 사체처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약제 (사용약물 :)	<input type="checkbox"/> CO ₂ 가스	<input type="checkbox"/> 경추탈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체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사체 처리업체명 기술)		

11. 연구(실험)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및 윤리 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본 시험의 시험물질 취급시 주의사항과 유해정도를 알려 주었다
<input type="checkbox"/>	동물로부터 찰과상, 교상, 알레르기에 대한 구급의약품을 갖추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실험자가 사육하는 동물의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실험자가 폐기물 취급, 개인위생,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예, 파상풍, 광견병) 실시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실험수행자에 대하여 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	(. .)
----	---------

I. 일반사항

심의번호: 제 _____ - 호

1. 신청일 : . . .

실험제목	(국문)
	(영문) ※ 영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가 필요시 기재
실험구분	<input type="checkbox"/>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_____)
과제책임자	소속 및 성명, 연락처 기재

※ 하나의 연구비 지원기관(과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제출

2. 연구과제 정보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3. 변경 내용

변경사유	아래에 기재 가능
<div style="text-align: center;">변경 주요내용</div>	<p>(예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실험 수행자(인원수) 변경 : 당초(홍길동 1명) → 변경후(김길동 1명) ※ 사유 : .. 2. 실험동물 규격(종류 및 마리수 등) 변경 : 당 초(쥐 압수 100마리) → 변경후(쥐 압수 70마리) 3. 실험방법(약물 종류 및 투여량 등) 변경 : 당초 ...

붙임 :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변경) 1부.

※ 붙임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붙임]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변경)

I. 일반사항

1. 신청일 : . . .

실험제목	(국문)	
	(영문)	※ 영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필요 시 기재
실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주/개월)	
	※ 하나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제출	
실험구분	<input type="checkbox"/>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실험실명	_____실험실(실번호: 호)	실험실 연락처 : () - 실험실 책임자 :

2. 신청자 및 실험수행자

동물실험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전공/학 위		*동물실험 교육이수	<input type="checkbox"/> 기관자체교육(일자: ,이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정부주관교육(일자: ,이수번호:) <input type="checkbox"/> 외부기관교육(일자: ,이수번호:)			
※신청자는 실험(연구)책임자를 의미							
동물실험 수행자	성명	직위	핸드폰	e-mail	*동물실험 교육이수 번호	역할	자체 교육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동물실험 교육이수번호는 기관(순천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주관)자체 또는 정부주관 등 교육이수시 기재합니다.

3. 연구비 지원기관 ※ 하나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제출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 . . ~ . . . (년/ 일)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학과(전공)	(인)	공동연구자
과제유형	<input type="checkbox"/> 국책과제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산업체 연구비 <input type="checkbox"/> 기관 자체연구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두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사용 동물 * 여러 종의 동물 사용시 사용 동물종에 따라 별도 작성 (아래 서식 복사) 합니다.

사용 동물종 (해당사항에 Check)			
<input type="checkbox"/> Mouse <input type="checkbox"/> Rat <input type="checkbox"/> Guinea Pig <input type="checkbox"/> Rabbit <input type="checkbox"/> Hamster <input type="checkbox"/> Dog <input type="checkbox"/> Cat <input type="checkbox"/> Pig <input type="checkbox"/> Gerbil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세부내용			
계통명	(예, C57BL)	일반명	(예, Black laboratory mouse)
사육장소	(※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장소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사육환경(조건)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을 기재		
품질구분			
<input type="checkbox"/> SPF(Specific Pathogen Free) <input type="checkbox"/> Gnotobiotte <input type="checkbox"/> CV(Conventional) <input type="checkbox"/> Germ Free			
* 실험동물 사육관리에 참고사항 기재. 예로 Conventional이기는 하나 Individual ventilated cage (IVC)에서 사육중임.			
생산처(업체) 및 연락처		운반처(업체) 및 연락처	
동물규격			
체중: ___g/kg	주령: ___weeks	pregnant: ___days	총 마리수: ___♂, 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년차별 사용동물 마리수		1년차: ___♂, ___♀, 2년차: ___♂, ___♀, 3년차: ___♂, ___♀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여부 및 병원체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시 식약청에 사전 보고할 것)			
<input type="checkbox"/> 사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위험군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3위험군(병원체:) <input type="checkbox"/> 제4위험군 (병원체:)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실험지침에 따름	
	병원체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1군전염병 (병원체:) <input type="checkbox"/> 제2군전염병(병원체:) <input type="checkbox"/> 제3군전염병 (병원체:) ※ 「전염병예방법」에 따름	

II. 동물실험 개요

1. 연구목적 및 동물실험 개요

가. 연구(실험) 목적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략하게 연구의 목적, 해당 연구가 인간과 동물복지, 학문의 발달 및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등을 설명합니다.

나. 예상 성과 :

다. 동물실험 개요 :

각 실험군의 자세한 수량과 실험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

※ 연구기간이 다년도인 경우, 연차별 동물실험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합니다.

2.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반드시 동물실험을 수행하여야만 하는 이유와

불필요한 중복실험이 아님을 과학적근거에 맞추어 설명 (아래 Pubmed 검색자료 첨부 등)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검토하였으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검색사이트 PubMed Current Contents Connect 한국학술정보 기타 ()

Key words (적어도 3개 이상 기입함)

비 고

4. 해당 동물(animal)과 종(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동물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

5.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가능하면 동물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

해당 동물수가 통계학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임을 설명
(동물수량의 적절성)

Ⅲ. 동물실험

1. 동물실험수행 계획	
가. 실험장소 및 실번호(위치) :	
나. 개시일 : 연월일 기재	
다. 종료일 : 연월일 기재	
라. 실험기간 :	

2. 생물학적 안전도 ※ 미생물 시험에만 해당됨, 해당란에 Check(v)				
GRADE	BS I	BS II	BSIII	BSV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동물실험방법(프로토콜) 개요		
보정	방법	
	횟수	
	1회당 소요시간	
식별법	키꼬리표, 문신, 목줄, 케이지표, 이식, 기타()	
Stress	사료 및 음수의 제한, 위대한 자극, 환경적인 스트레스	
투여방법	감염인자 및 adjuvant	
	Route, 시료 및 용량	
	일정	
Sampling	종류	
	용량 및 횟수	
	방법 및 부위	

외과적 처치	없음	생존 수술	비생존수술
외과적 처치 (각 수술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수의학적 관리	동물에서 질병 발생시 바람직한 조치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예, 실험 동물의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치명적인 감염이나 질병 발생시 지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안락사를 행한다.)		
실험의 종료시점 (※ 인도적 종료시점 및 동물실험 종료시점에 대해 기술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종료시점: 동물에게 심각한 임상증상이나 잠재적으로 치사할 가능성을 내재한 종양세포, 생물학적 물질 및 감염성인자의 투여 또는 방사선조사, 독성화학물의 투여시 동물실험종료점에 대한 기준 (예, 종양크기, 체중증감율, 사료섭취불가, 행동학적인 이상, 임상 증상, 독성증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동물실험종료점의 기준에 의거하여 안락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수행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상의 종료시점 		

4. 위험물질 처치 유무 ※ 해당있는 경우 기재						
종류	×	○	승인기관 및 승인일	물질명	투여방법 및 dose	Tracking #
방사선						
생물학적						
위험화학물						
Recombinant DNA						
기타						

※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 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병원균이나 재조합 DNA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6.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해당사항에 V표, 체크시 별표 참조)
<input type="checkbox"/> Grade A : 생물개체 미사용 실험,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Grade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Grade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input type="checkbox"/> Grade D;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 <input type="checkbox"/> Grade E;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등)
<p>※ Grade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불가피한 동물실험은 8번 항목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p>

7.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마취제 · 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시간, 경로를 기입) - 약제종류(약물명) : - 투여량 등 기재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8.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필요시, 별지로 상세 사유 첨부)

<input type="checkbox"/>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 상 진정 · 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 없음 (상세 사유 기재) 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input type="checkbox"/>	연구목적 상 인도적 종료시점을 채택하지 않고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함. (상세 사유 기재) 예)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9.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기재할 것
*안락사시 최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내용을 기재(아래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

10. 안락사 및 사체처리 방법

약제(사용약물 :) CO₂ 가스 경추탈골 기타()

※ 사체처리방법 : *보관 장소 및 사체처리 업체명 기술*

※ 실험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11. 연구(실험)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및 윤리 교육 실시

본 시험의 시험물질 취급시 주의사항과 유해정도를 알려 주었다

동물로부터 찰과상, 교상, 알레르기에 대한 구급의약품을 갖추고 있다.

실험자가 사육하는 동물의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실험자가 폐기물 취급, 개인위생,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다.

적절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예, 파상풍, 광견병) 실시하고 있다.

실험수행자에 대하여 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 연구자의 허가사항 ※ 해당되는 연구자만 기재

- 향정신성 약물 취급허가 : 유 (), 무 ()
- ※ 담당기관의 승인 증명서 사본 제출
- ※ 향정신성 약물이 동물실험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담당기관의 취급허가를 취득한 뒤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제출 가능
-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담당기관 연락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 ☎ 062-602-1451)

13. 기타사항 (첨부 목록 등)

승인신청서외에 별도로 첨부될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목록을 기재 (예, 붙임 1.....)

※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위원들로부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서식에 나와 있는 예시문(파란색 글자)은 제출 시 삭제합니다.
2. 연구비 과제별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두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동물실험 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항목은 공란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합니다.
5.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연구(동물실험)책임자

(인)

[별표]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의 분류 기준

등급	분류 기준
등급A	<p>○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않는 실험 또는 식물, 세균, 원충 또는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실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화학적 미생물학적 연구.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연구. 조직배양, 부검에 의해서 얻어진 조직을 이용한 연구. 2. 도축장으로부터 얻은 조직을 이용한 연구. 발육 계란을 이용한 연구.
등급B	<p>○ 실험이나 실습, 연구 및 수술을 목적으로 하여 사육 중이거나 적응 또는 유지되는 동물로서 아직 상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물. 다음과 같은 상태의 동물이 포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정에 맞는 케이지에서 사육 중이며, 가이드라인이나 법규에 맞게 사육 중인 동물. 사육 집단에는 부모군과 자식군을 포함한다. 2. 적절한 법규에 의해 사육되며 규정된 사육케이지에서 사육 중인 새로 획득한 동물 3. 적절한 포획 조건 하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 또는 관찰 중인 야생동물.
등급C	<p>○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또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교육, 연구, 실험에 사용될 동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해질 용액의 투여, 약물의 경구 투여, 정규 수의학 연습에 의거한 채혈이나 카테터 삽입 (개의 두정맥, 고양이의 경정맥, 설치류의 복재정맥으로부터의 채혈 또는 카테터 삽입), 정규 방사선 촬영, 비자극성물질의 비경구 투여 등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정.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부합되며 인도적이면서 빠르고, 무의식적인 죽음을 야기할 수 있는 과정을 이용하는 안락사 3. 간단한 검사에 필요한 기간정도의 보정 또는 훈련된 동물에서 단시간의 물리적 보정
등급D	<p>○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이 수행될 동물로서, 적절한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등이 사용될 동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적인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훈련 받은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외과적 처치로서 생검, 생식선적출술, 혈관의 노출, 만성적인 카테터 장착, 개복술, 복강경 사용. 2. 심장채혈이나 랫트나 기니피과 같이 진성 안와정맥동이 없는 종의 안구주변에서의 채혈 과 같이 신체를 깊게 침입하여 수행하는 채혈 3. 고통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통제 투여로 완화 될 수 있는 약물, 화학물질, 독성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투여.
등급E	<p>○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이 수행될 동물로서, 적절한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 등이 사용될 경우 교육, 연구, 실험, 수술, 시험의 실험과정, 결과, 해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성시험, 미생물학적 병원성 실험, 방사선 조사시험, 스트레스, Shock, 통증에 대한 연구와 같이 진통제에 의하여 완화되지 않는 고통이나 억압을 나타내는 과정 2. 고통이나 억압이 완화되지 않는 체강의 관통에 의한 수술 후유증, 정형외과 수술, 치과수술, 경부조직 또는 연부조직 손상 3. 사람에게서 통증을 일으킬 정도의 전기자극 4. 비인간 영장류를 적응기를 거치지 않고 원숭이 의자에 보정하는 행위 <p>※ 등급E : 통증 및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과 적절한 안락사, 마취, 진정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첨부자료를 통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p>